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9월 8일, 김남희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9월 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2025.11.1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6.2.27.)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6.3.12.)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6.3.13.)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남희 의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은 정부의 복지사업 중 단가가 낮은 대표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와 운영비의 구분 없이 총액 개념의 활동 지원급여비용으로 지급되고 있어 활동지원인력 노임 단가가 상대적으로 커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음.

이 같은 착시효과로 말미암아 정부는 노임 단가가 낮아서 발생하는 활동지원인력 처우 문제에 대하여 활동지원기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이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있으며, 활동지원기관이 인건비를 유용할 경우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어 활동지원기관의 투명한 운영에 대한 불신감마저 증폭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 지급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3.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김남희 의원)

가. 국가는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준수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제4항 신설).

나. 활동지원사업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와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함(안 제3조의 2제2항 삭제).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

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장애인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

라.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22조제8항 신설).

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재무·회계 기준을 위반한 경우,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위반한 경우,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바.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활동지원기관의 운영비를 구분하여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오세일)

개정안은 국가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준수하기 위한 여건 마련 노력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뿐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의 경제적 보상 수준을 현실화하고 근

로 여건을 개선하여, 장기적으로 활동지원급여의 질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다만,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여건 마련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노력 의무’로 한정할 경우 실질적 이행이 담보되기 어렵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여건이나 정책 우선순위 차이에 따라 적정 인건비 기준 적용이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거나 이행 확보를 위한 실효적 장치를 함께 명시하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활동지원사업 실태조사를 장애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독립된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활동지원 수급자격, 급여 수준과 만족도, 활동지원기관 운영, 인력의 근로조건과 처우 등 활동지원사업 고유의 세부적·전문적 영역을 독립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활동지원사업 실태조사를 장애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조항을 삭제할 경우, ① 장애인 관련 실태조사가 중복되어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 ② 현행 「장애인활동법」 제3조의2제2항이 2024년 12월에 신설된 이후 아직까지 장애실태조사에 적용된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조항 삭제 필요성에 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서는 5년 단위 장애인활동 지원 기본계획(보건복지부장관)과 매년 시행계획(지방자치단체의 장)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도 규정

하고 있음. 이는 활동지원사업의 중·장기 비전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행력을 강화하여, 서비스의 지속적 개선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¹⁾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에 따른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년 ~ 2027년)에는 활동지원 대상자 확대, 단가 인상, 보전급여 제도 개선,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확대,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제공기관 선택권 강화 등 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한 과제들이 이미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활동지원사업에 한정해 별도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할 경우, 기존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체계와의 중복 및 조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시행계획의 이행력이 제한될 우려도 있으므로, 별도 계획 수립의 실효성과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활동지원기관이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분하여 급여비용을

1)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문화체육관광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그 사업계획과 전년도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구하고,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분하여 지급하며, 급여비용 산정 과정에서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반영함으로써,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합리적인 인건비 지급을 법률에서 보장하고, 급여비용 산정 시 국가에서 마련한 적정 인건비를 충실히 고려하도록 하려는 취지임. 다만, 활동지원사업은 수급자에게 서비스 이용권을 부여하고 이용 실적에 따라 급여비용을 정산하는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지원기관에 직접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분하여 지급하는 구조가 아님. 유사한 구조의 장애인 복지서비스로는 발달재활서비스,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등이 있으나, 적정 인건비 기준 또는 인건비 지급 권장 비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개정안에서와 같이 활동지원기관이 급여비용 청구 시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분하도록 의무화할 경우,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 도입의 타당성과 실행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활동지원기관의 ‘적정 인건비 기준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재무·회계 기준 위반 및 인건비의 목적 외 사용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명령, 업무정지·지정취소·과징금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과 임금 유용 방지, 급여비용 집행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임. 다만, 개정안은 동일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사유(안 제23조의2 제1호·제2호·제3호), 지정취소 등 사유(안 제24조제1항제7호·제8호·제

9호), 과징금 부과 사유(제24조의2제1항)로 중복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동일한 위반 행위가 각각 중복 규정되면, 법 적용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특히, 시정명령은 법 위반에 대하여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와 같은 제재처분이 부과되기 전에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²⁾ 개정안에서와 같이 시정명령, 지정취소 등, 과징금 처분의 사유가 동일할 경우, 처벌에 앞서 개선을 유도하는 시정명령의 기능이 약화되고, 제재처분 간 구분이 모호해지므로, 집행 과정에서 선택 재량이 과도하게 확대되거나 동일 행위에 대해 다른 처분이 내려지는 등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제재처분의 일관성과 집행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재 사유를 단계별로 명확히 구분하거나 규정 간 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보건복지부령) 위반 시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취소 및 과징금 부과로 이어지는 단계적 제재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5.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6.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수진)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2) 국회사무처. (2024).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7.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8.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